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나경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50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나경원 · 김성원 · 고동진

김선교 • 송언석 • 성일종

송석준 • 박준태 • 서지영

강승규 · 곽규택 · 이종배

박충권 • 조경태 • 박성훈

박수영 • 서일준 • 신성범

김미애 • 박덕흠 • 김민전

김장겸 · 김희정 · 조배숙

인요한 · 임이자 · 임종득

유용원 · 조승환 · 이허승

이만희 · 엄태영 · 최보윤

윤상현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특히, 해외에 기반 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 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,

소상공인, 콘텐츠 제작자,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.

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,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. 특히, 가상사설망(VPN)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
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이용자의 이용・접속 장소 표시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조치의무사업자"라 한다)는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

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,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, 제4항에 따른 점검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표준을 고시하고,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- ⑦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,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3.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.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 한 자
- 4의5. 제44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한 자
- 4의6. 제44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제44조의11(이용자의 이용・접속 장소 표시 등) ①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조치의무사업자"라 한다)는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・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
	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의

기록되도록 하고, 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,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, 제4항에 따른 점검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표준을 고시하고,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수 있다.

①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,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76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-----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의2. (생 략) <신 설>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<신 설>

4의3. • 4의4. (생략)

5. ~ 25. (생략)

④ (생 략)

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4의3.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

4의4.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 하여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 하지 아니한 자

4의5. 제44조의11제3항을 위반 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・관 리 실태를 기록 · 보관하지 아 니한 자

4의6. 제44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<u>4의7. · 4의8.</u> (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)

5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